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6일, 박덕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덕흠의원)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그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허위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황충연)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영업자에게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준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101조제1항 신설 등).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고기·계란·우유 등이 일정한 운송·도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동물복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증 없이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거나 허위·과장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표시 형식의 일부 오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이 ‘동물복지’ 표시로 유통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부정확한 표시 행위는 제도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훼손하고 성실한 인증 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재 수단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영업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품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허위보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상향 조정(기존 500만 원 또는 300만원 → 1천만원 또는 500만원)하려는 것으로,

영업자의 시정조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물복지축산물 역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므로 허위 또는 과장 표시된 축산물의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이미 시정명령, 회수조치 및 회수계획 보고 등 일정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 표시 기준 위반 시 회수 의무 규정 등의 신설이 필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또한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